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5137289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1. B조합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8. 11. 6.

판결 선고2018. 12.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1,538,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7. 24.까지, 피고 D 주식회사는 3,047,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7. 25.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11,538,966원 중 8,970,044원, 피고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3,047,0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조합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그 4/5를, 피고 B조합이 1/5을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하 피고 C,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피고 B조합에 대하여는,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47,841,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포시 E아파트 12개동 40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4. 15.경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원고와 사이에, 피고 C는 도장공사를, 피고 D은 도배공사를, 별지 표 기재 하수급업체들 중 피고 C, D을 제외한 주식회사 F 등(이하 위 피고들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을 이 사건 하수급인들, 위 피고들을 제외한 하수급인들을 F 등이라고 한다)은 석공사 등을 하도급받는 계약을,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4. 25.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하자담보채권에 기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2530호로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8. 13.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1차 선행소송에 피고보조참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1. 4. 22.경 및 이 사건 1차 선행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1차 선행소송의 판결이 2014. 12. 5.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근거로 원고 등에게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또는 도급계약상 하자보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2차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6013호로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2차 선행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2016. 5. 9.경 이 사건 하수급인들 및 그 하자보증사인 피고 B조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2차 선행소송은 2017. 2. 1.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7. 7.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하였다.

사. 이 사건 2차 선행소송에서 피고 C가 한 도장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11,538,966원으로, 피고 D이 한 도배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3,047,041원으로 인정되었다. 한편 피고 B조합이 보증한 부분은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하자보수비 중 8,790,044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하자보수비 전액이며, F 등에 대하여는 합계 47,841,743원이다.

아. 원고는 2017. 2.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2차 선행소송의 판결원리금으로 피고 C, D에 관한 하자보수비 포함 419,013,18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는 11,538,966원, 피고 D은 3,047,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피고 C는 2017. 7. 24., 피고 D은 2017. 7. 2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조합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11,538,966원 중 8,970,044원,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3,047,0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7.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조합에 대하여 F 등을 보증한 부분 47,841,743원에 대하여도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등 참조).

또한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169조), 연대보증인에게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 관한 약정에 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가장 늦은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가 각 2013. 6.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 상사채권의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일응 이 사건 하수급인들의 하자담보책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2차 선행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2016. 5. 9.경 이 사건 하수급인들 및 그 하자보증사인 피고 B조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한 사실, 2017. 2. 1. 이 사건 선행소송이 확정되어 종료된 사실, 이 사건 소는 2017. 7. 14.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판결 참조), 그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되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하수급인들이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또는 3년)으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가 지속되는 중에 제기되었는바, 피고 C, D의 하자담보책임 및 피고 B조합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이 부분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 B조합이 F 등을 보증한 47,841,743원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선행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유지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하자보수비 등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보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조합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용호

별지